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 건 번 호 제2025-001-004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Alipay Singapore E-Commerce Private Limited (등록번호 : 201000378D)

128 Beach Road, #20-01, Guoco Midtown Office, Singapore 189773 대표자

의결연월일 2025. 1. 22.

주 문

-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 가. 피심인은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카카오페이로부터 제공받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로 구축·이용된 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2023-6호, 2023.9.22. 시행)」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유

I. 기초 사실

Alipay Singapore E-Commerce Private Limited(이하 '알리페이'라 한다)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처리 중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법」1)(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피심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종업원 수 (명)
Alipay Singapore E-Commerce Private Limited	201000378D		128 Beach Road, #20-01, Guoco Midtown Office, Singapore 189773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페이-애플-알리페이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언론보도('24. 8. 13.)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4. 8. 22. ~ '24. 11. 20.)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¹⁾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2. 행위 사실

가. 서비스 이용 과정 및 정산 구조

이용자가 애플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①애플 계정에 카카오페이를 결제 수단으로 연결하는 '결제수단 등록단계'를 먼저 수행하고, ^②애플이 제공하는 서비스(앱스토어, 애플뮤직 등)에서 원하는 상품과 결제수단을 카카오페이로 선택하여 결제하는 '간편결제 이용단계'로 구분된다. 이 과정에서 알리페이가 중계하여 애플의 결제 청구를 카카오페이에 요청하고, 카카오페이의 청구 완료 결과를 애플에 회신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알리고 있다.

이용자가 애플 서비스에서 결제 수단으로 카카오페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애플 계정에 카카오페이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애플은 NSF* 점수를 참조하고 카카오페이는 결제 처리를 목적으로 카카오페이 이용자에게 '국외 이전' 및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고 있다.

* NSF 점수(Non-Sufficient-Funds Score, 미충당자금): 애플 서비스에서 카카오페이 결제수단 등록 및 결제 청구에 필요한 고객별 점수로, 일괄청구 시 결제 잔액 부족 가능성등을 판단하기 위한 점수

또한, 이용자가 애플 서비스에서 카카오페이를 선택하여 결제 시 애플은 알리페이가 미리 산출해 둔 이용자의 NSF 점수를 참조하고 카카오페이에 단건·일괄청구를 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D(애플에서 카카오페이로 청구한 날)+2에 청구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순 정산금액을 한국통화로 애플의 지정 계좌(도이치은행)로 송금하고, 애플은 M(카카오페이로 청구된 월)+1에 알리페이에 건당 수수료를 송금하고 있으며,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 사이에 수수하는 수수료는 없다.

카카오페이는 2019년 7월경 애플 이외의 해외(중국·일본 등) 가맹점(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출시하였고, 결제 시 국외 이전 및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고 있으며, 카카오페이가 가맹점(또는 이용자)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대략 %) 중 알리페이 망 사용료(대략 %)로 지급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카카오페이는 애플 서비스(앱스토어, 애플뮤직 등)의 간편결제 수단에 카카오페이 (머니) 서비스를 연동('19. 7. 11.)하면서, 애플의 일괄청구'리스크 감소에 필요한 NSF 모델(알리페이 보유) 구축을 위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①총 3회 고객정보를 알리페이에 전송하고, ^②고객별 NSF 점수 산출을 위해 전체 고객정보를 매일(D+1) 알리페이에 전송하였다.

* (애플의 일괄청구) 애플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가 일정기간 동안 구매한 건들을 모아서 카카오페이에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요청하는 방식

※ 전송 정보(이하 '본건 정보'라 한다)

- ① (NSF 모델 구축을 위해 전송된 정보) '18.2.28.~3.31. 기간의 고객정보를 총 3회 ('18.4.27., '18.6.5., '18.7.11.) 전송함. 당시 데이터가 파기되어 확인 불가하나, 최소 15,928,549명('18.3.31. 기준 가입자)의 모든 이용자(애플 이용자 및 미이용자) 데이터 가 전송됨
- ② (NSF 점수 산출 및 현행화를 위해 전송된 정보) : '19.6.27.~'24.5.21. 기간 동안 D+1에 중복제거 4,045만 명(누적 총 542억 건) 전송

카카오페이-애플-알리페이는 애플 서비스의 결제 수단으로 카카오페이를 추가하는 워크샵 등을 추진('18. 2월~)하였고,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는 NSF 모델 구축 업무를 비밀유지 대상으로 포함한 '상호기밀유지협약(NDA)'을 체결('18. 5. 4.)하였을 뿐, 본 NDA 이외에 'NSF' 관련 사항을 약정한 계약서류는 없었다.

알리페이는 중간에서 애플과 카카오페이가 요청하는 바를 전달(메일 등)하는 역할로, 애플의 NSF 점수 요청 사실을 카카오페이에 전달('18. 2. 2.)하면서 본건 정보*(총 24개 항목, 중복제거) 추출 요청하여 애플 맞춤형 NSF 모델을 구축하였다.

- * 계정정보(11개), 자금 출처 정보(5개), 거래 정보(7개), 데이터수집일 등 총 24개 항목
 - 암호화한 계정정보 : 내부고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NSF 모델은 알리페이가 애플의 청구모델(단건·일괄 청구)의 미충당자금(NSF)으로 인한 연체 손실 최적화에 필요한 NSF 점수 제공을 위해 카카오페이에 본건 정 보(총 24개 항목, 중복제거)를 총 3회 전달받아 자사가 보유한 NSF 모델을 커스터마 이징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는 애플 이용자 외에도 애플 미이용자 등 전체 이용자 정보(최소 15,928,549명)를 알리페이가 요청하는 형식으로 추출하여 알리페이에 직 접 3회 전송(ftp 방식)하면서 이용자에게 동의받거나, 국외 이전 사실에 대해 고지 하지 않았다.

- ※ 알리페이는 모든 카카오페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한 사유에 대해 ①NSF 점수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소비 데이터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②애플 신규 이용자에 대한 최초 거래 시 NSF 스코어를 산출하여 애플에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당 스코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소명('24. 9. 5. 제출자료)
- ※ 카카오페이는 애플이 요청하는 NSF 시스템의 부재로 알리페이의 NSF 시스템을 사용하 였다고 소명

카카오페이-애플-알리페이는 시행('19. 7. 11.)을 앞두고, 카카오페이↔알리페이 ('19. 6. 20.), 카카오페이↔애플('19. 7. 2.), 애플↔알리페이('19. 7. 4.) 사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NSF 관련 사항을 약정한 계약서류는 없었다.

※ 추가로, 애플-알리페이는 2017년경 '아태지역 결제수단 제공' 관련 통합업무를 위한 협력을 진행하였고, '19.12월 First Amendment to Alipay-Apple Global Framework Agreement(GFA)의 부수 약정으로 알리페이가 애플의 수탁자로서 행위 시 애플의 지시·감독을 받는 등 내용을 서약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의 고객별 NSF 점수 산출 및 현행화를 위해 '19. 6. 27. ~ '24. 5. 21. 동안 카카오페이로부터 일일 배치로 D+1에 카카오페이의 전체 이용자의 본건 정보를 전송받아 고객별 NSF 점수를 미리 산출해 두고, 애플 서비

스에서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서비스 시작일('19. 7. 11.)부터 애플이 요청하는 고객에 대한 NSF 점수를 전송(40,449,487명, 누적 542억 건)하였다.

- ※ 카카오페이와 애플은 가맹점 계약을 체결('19.7.2.)하고 애플은 자사 서비스에서 카카오 페이 결제 서비스를 시작('19.7.11.)하면서 알리페이가 산출한 고객별 NSF 점수를 사용함
- ※ 특히 카카오페이 가입자 중 애플(iOS) 이용자는 30%에 불과하고, 애플 결제수단 등록 이용자 수는 전체 카카오페이 가입자 수의 19%에 불과

이 과정에서 이용자가 애플 서비스에서 카카오페이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하거나 결제 처리 시, 카카오페이는 애플과 알리페이에 제3자 제공 동의와 별도의국의 이전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으나, NSF 점수 산출 및 현행화를 위해 매일 전체 이용자의 본건 정보가 전송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거나, 별도의 국외 이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애플 미이용자의 정보까지도 전송되었다.

※ 카카오페이를 애플 결제 수단으로 쓰지 않는 이용자는 '국외 이전' 및 '제3자 제공' 동의 화면을 접할 일이 없음

또한, 카카오페이는 간편결제 서비스 시행('19. 7. 11.) 전,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개인정보 해외 제공 동의'부분에 결제 처리를 위해 애플에 제공한다고만 고지 ('19. 6. 27.)하였으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부분에는 결제 처리를 위해 애플과 알리페이에 제공한다고 공지('21. 6. 24.)하고, '해외 결제 서비스를 위한 개인 (신용)정보 국외 이전 동의'부분에 결제 서비스를 위해 애플과 알리페이에 제공한다고 고지('23. 12. 5.)하였으나, NSF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고지된 사실이 없었다.

애플은 한국의 결제수단 제공사와 직접 연동하지 않고 알리페이 또는 엔에이 치엔한국사이버결제㈜(이하 'NHN KCP'라 한다)를 통해 연동하며, 그중 카카오페이만 알리페이를 통해 연동하고, 그 외 신용카드, 휴대폰결제, PAYCO 등은 NHN KCP를 통해 연동하면서 애플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NHN KCP를 수탁사로 고지하고 있었다.

< 애플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발췌 >

:			
계인정보회	리 접무의 위탁		
Apple Dis	tibution International은 다음과 같이 계반정보	의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			
	件件	위탁하는 업무) 세선스 의 대용	
	매달권리가 유한테라	제안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답법에 따른 제안정보 관인 국제자리인 법무	
	면비아大는한국사이바를제다	이용용신자 요금 방구 세스 및 강이대병합 세스물위한 제안정보 자리	
•		;	

반면, 구글은 카카오페이 결제 처리와 관련하여 알리페이에 업무위탁 및 국외이전 하는 사실을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 항목에 기재하고 있었다.

카카오페이는 본건 정보 중 이용자별 고유값(key값)에 해당하는 내부고객번호 (account_id) 등을 알리페이로 암호화하여 전송하였으나(애플의 이용자별 NSF 점수 조회용), 알리페이가 애플 외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한 고객을 동일한 고유 값을 통해 식별 가능한 상태로 방치하였다.

카카오페이 이용자가 애플 이외의 알리페이 가맹점(온·오프라인)에서 결제하면 카카오페이가 제3자 제공한 이용자별 고유값(해시처리된 account_id)이 포함되어 전송되었고, NSF 관련으로 전송된 본건 정보의 이용자별 고유값(해시처리된 account_id) 또한 동일하여 결합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카카오페이는 NSF 관련 본건 정보(처리위탁으로 주장하는 정보)를 알리페이 가맹점에서 결제한 정보(제3자 제공된 정보)와 특별히 구분하여 다르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 알리페이는 알리페이 가맹점에서 결제한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NSF 정보를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던 상황임. 알리페이는 양 데이터가 별도 DB로 관리되고 있다고 소명하였고 서로 결합한 증거는 확인하지 못함 카카오페이는 '금감원 이슈로 일일 연동을 중단한다.'라는 사실을 이메일로 애플에 알리고('24. 5. 21.), 알리페이에는 컨퍼런스콜로 알리고 '24. 5. 22.부터 본건 정보의 API 연동을 중단하였으나, 애플은 카카오페이의 API 연동 중단 연락을 받고도 '24. 8. 7.까지 알리페이에 이용자의 NSF 점수를 요청하여 결제수단 등록, 일괄청구 등에 참조하였고, 알리페이는 '24. 5. 21.자로 旣 산출되어 있던 고객별 NSF 점수를 애플에 전송하였다.

이후 애플은 '24. 8. 8.부터 NSF 점수 조회를 중단하였고, 알리페이는 '24. 5. 21.자로 旣 산출되어 있던 고객별 NSF 점수를 '24. 8. 21.에서야 삭제하였다.

- 1) **(사건 규모 및 항목)** NSF 모델 구축에 이용된 약 1,592 만 명 및 NSF 점 수 산출 등에 이용된 약 4,045만 명(누적 542억 건)의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본건 정보')
 - * 내부고객번호별 기본정보【내부고객번호(해시), 휴대전화번호(해시), 이메일주소(해시), 카 카오페이 가입일시, 카카오페이(머니) 가입일시, 카카오서비스 가입일시, KYC(고객확인 인증, 신분증 확인) 수행 여부, 회원 등급, UUID, 휴면계정(90일 초과 미사용) 여부, 블 랙리스트 해당 여부)】, 자금 출처【카카오페이(머니)에 연결된 계좌 존재 여부, 카카오페이(머니)에 연결된 계좌수, 카카오페이(머니) 잔고, 카카오페이(머니) 충전 횟수(최근 7일간), 카카오페이(머니) 출금 횟수(최근 7일간)】, 거래정보【카카오페이 결제 거래 여부(최근 7일간), 카카오페이 결제 여부(최근 7일간), 카카오페이 결제 여부(최근 1일간), 카카오페이 결제금액(최근 1일간), 결제 가맹점 수(최근 7일간), 카카오페이(머니) 송금 여부 (타인간), 카카오페이(머니) 송금 사용 횟수(최근 7일간)】, 데이터수집일자(D) 등 총 24개 항목

< 사건 항목 및 규모 ('18. 2. 28. ~ '24. 5. 21.) >

전송 목적 구분	대상 기간	전달 시기	계
		(1차) '18.04.27.	
NSF 모델 구축	'18.2.28.~3.31.	(2차) '18.06.05.	약 1,592만 명
		(3차) '18.07.11.	
NSF 점수 산출 및 현행화	'19.6.27.~'24.5.20.	D+1 (매일 자동전송)	약 4,045만 명 (누적 542억 건)

< 참고: NSF 점수 관련 카카오페이→알리페이 전송 항목 >

		_	항목명	항목 설명	사용
구	분	영문	<u> </u>	영국 교명 (D+일 1회 전송, 알리페이 30일 보유)	목적
1		account_id	내부고객번호	SHA2 256으로 해시 (Salt값 미적용)	011 TT
2		mobile	휴대전화번호	암호화(AES128)된 전화번호+문자열 'null' 결합 후 SHA2 256 해시	에플 계정과 매칭
3		email	이메일주소	이메일+account_id+':' 조합 후 SHA2 256 해시	110
4	(원 - 급기	kpay_register _time	카카오페이 가입일시	가입일시 정보	
5	부 고 객	kmoney_ register_time	카카오페이(머니) 가입일시	가입일시 정보	
6	^객 번 호	kservice_ register_time	카카오서비스 가입일시	옵션값 * 가입일과 동일하여 Null 값 으로 전송 됨	
7	별	is_kyc	KYC(고객확인인증, 신분증 확인) 수행 여부	상태값(Y(1)/N(0)) 정보	
8	정 보	account_type	회원 등급	상태값(Y(1)/N(0)) 정보 * 회원 등급 구분이 없어, Null값 으로 전송 됨	
9		device_id	UUID	UUI D(Universally Unique IDentifier): 최초 앱 실행시 생성된 랜덤값(앱 재설치 시 변경됨)	
10		is_dormant_ account	휴면계정(90일 초과 미사용) 여부	상태값(Y(1)/N(0)) 정보	
11		is_black_list	블랙리스트 해당 여부	상태값(Y(1)/N(0)) 정보 * 별도 관리하지 않아, Null값으로 전송됨	
12		is_bind_bank card	카카오페이(머니)에 연결된 계좌 존재여부	카운트(COUNT) 정보	
13	② 자	bankcard_ count	카카오페이(머니)에 연결된 계좌수	카운트(COUNT) 정보	NSF
14	지금 출 처	balance	카카오페이(머니) 잔고	잔액 정보	모델 구축 및
15	처	fund_in_ times_7_days	카카오페이(머니) 충전 횟수(최근 7일간)	카운트(COUNT) 정보 * 개인간 송금 포함	· · · · · · · · · · · · · · · · · · ·
16		fund_out_ times_7_days	카카오페이(머니) 출금 횟수(최근 7일간)	카운트(COUNT) 정보 * 결제 및 개인간 송금 포함	
17		trans_count_ 7_da <i>y</i> s	카카오페이 결제 거래 여부(최근 7일간)	상태값(Y(1)/N(0)) 정보	
18		has_trans_7_ days	카카오페이 결제 여부 (최근 7일간)	상태값(Y(1)/N(0)) 정보	
19	3	trans_count_ 1_da <i>y</i> s	카카오페이 결제 여부 (최근 1일간)	상태값(Y(1)/N(0)) 정보	
20	거 래 저	trans_amount _1_days	카카오페이 결제 금액 (최근 1일간)	결제 금액 정보	
21	정 보	merchant_ count_7_days	결제 가맹점 수 (최근 7일간)	카운트(COUNT) 정보	
22		has_transfer	카카오페이(머니) 송금 여부(타인간)	상태값(Y/N) 정보	
23		transfer_times _7_days	카카오페이(머니) 송금 사용 횟수(최근 7일간)	카운트(COUNT) 정보	
24	-	dt	데이터 수집일자(D)		

다. 사건 경위

- ('17년경 : 글로벌 통합 협력 체결) 애플과 알리페이는 '아태지역 결제수단 제공' 관련 통합업무를 위한 협력 추진
- ('17.12월 : 사업계획)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는 애플 서비스의 결제 수단으로 카카오페이를 추가하는 계획을 함
- ('18.4월~: NSF 모델 구축용 고객데이터 전송) 알리페이는 애플에서 요청하는 NSF 점수 산출 모델 구축을 위해 카카오페이에 본건 정보*(총 24개항목, 중복제거) 추출 요청
 - * 계정정보(11개), 자금 출처 정보(5개), 거래 정보(7개), 데이터수집일 등 총 24개 항목 계정정보 : 내부고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가 요청하는 형식으로 추출한('18.2.28.~3.31.) 본건 정보를 총 3회(4/27, 6/5, 7/11) 알리페이에 전송^{*}
 - * 전송건수 : 15,928,549명('18.3.31. 기준 가입자)
- ('18.5.4. : 카카오페이-알리페이 계약 체결)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는 NSF 모델 구축 등이 포함된 '상호기밀유지협약(NDA)*'을 체결
 - * MUTUAL CONFIDENTIALITY AND NON-DISCLOSURE AGREEMENT('18.5.4.)
 - ※ 본 NDA 이외에 'NSF' 관련 사항을 약정한 계약서류는 없음
- ('19.6.20. : 카카오페이-알리페이 계약 체결)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는 정산, 환불, 거래, 승인된 결제 서비스 등이 포함된 '애플 가맹점 부속 계약(Coope ration Agreement)' 체결
- ('19.6.27.~'24.5.21. : 고객별 NSF 점수 산출)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로부터 일일 배치로 D+1에 카카오페이의 모든 본건 정보를 받아 고객별 NSF 점 수를 업데이트하고, 애플 서비스에서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서비스 시작일 ('19.7.11.)부터 애플이 요청하는 고객에 대한 NSF 점수를 전송*
 - * 전송건수 : 40,449,487명(누적 542억 건)

- ('19.7.2. : 카카오페이-애플 계약 체결) 카카오페이와 애플은 애플 서비스에 서 결제 대행 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된 '가맹점 계약' 체결
 - * Apple Distribution Informational Services Agreement('19.7.2.)
- ('19.7.2. : 카카오페이-알리페이 계약 체결)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는 '글로 벌 전략적 파트너 부속 계약'이 포함된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서약*' 체결
 - *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서약) Pledge for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 Protect ion of Information
- ('19.7.4. : 애플-알리페이 계약 체결) 애플과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 간편결 제 서비스 관련 수수료, 결제 채널 제공 등이 포함된 계약^{*} 체결
 - * Alipay-Apple Global Integration Agreement('19.7.4.)
- ('19.7.11. : 애플 서비스에서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시행)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 간편결제 서비스 시행하면서 카카오페이를 애플 서비스 결제수단으로 등록하는 이용자에게 애플(가맹점) 및 알리페이(결제중계기관)로 제3자 제공 및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는 받았으나, NSF 점수 관련 본건 정보를 제공한다는 언급은 없음
- (알리페이가 NSF 점수를 애플에 전달) 애플은 고객 행동 판단에 사용하기 위해 알리페이로부터 NSF 점수를 전달*받음
 - * (i) 애플 계정에 결제 수단으로 추가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ii) 카카오페이를 애플 계정의 결제 수단으로 연결한 상태에서 결제 세션을 열어 거래를 진행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 ('19.12.2. : 애플-알리페이 계약 체결) 애플과 알리페이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의무·통제 관련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정보보안에 대한 변경 계약' 체결
- ('24.5.22. : NSF 점수 현행화용 데이터 제공 중단) 카카오페이는 애플에 본 건 정보의 일일 전송을 중단한다고 알림('24.5.21. 메일 발송)
- ('24.8.8. : NSF 점수 조회 중단) 애플은 결제 시 알리페이의 NSF 점수 조회 API 연동 중단

3. 개인정보의 취급.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본건 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제공받은 행위

알리페이(애플의 수탁사)는 카카오페이에 본건 정보의 제공 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달하였고,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공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 11. 21. 알리페이에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카카오페이는 같은 해 12.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71조는 "제18조제1항·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제2호)'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사업자 간 관계 및 개인정보 보호법상 법적 지위

카카오페이는 애플의 결제수단 연동을 위해 애플의 청구모델(단건·일괄 청구)에 따른 이용자의 지불 가능 여부를 판단할 목적으로 NSF 모델 구축 및 점수 산출 (알리페이 보유)을 위한 카카오페이 본건 정보를 애플에 제공하였으며, 애플은 NSF 점수 산출, 정산 등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알리페이에 위탁하였다고 판단된다.

①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 간 NSF 점수 산출 및 전송 업무에 대한 명시적인 위탁계약이나 공지가 없는 반면, 애플은 알리페이가 결제정보 연결 과정에서 애 플을 대리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할 경우 수탁자로서 애플의 지시를 준수하는 내 용의 계약 존재하는 점, ②알리페이는 NSF 점수 산출 및 애플이 요구하는 고객 의 NSF 점수 전송 업무와 관련하여 카카오페이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제공받지 않고 있으나, 애플로부터는 결제수단 연결 업무에 대한 수수료(PG사 수수료)를 건 당 정액으로 지급받고 있는 점, ③애플이 한국의 결제수단 제공사들*과의 데이터 연동 부담을 덜기 위해 통신 API 개발 등 업무를 알리페이 및 NHN KCP**에게 위탁중이며, 애플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NHN KCP를 수탁사로 고지하고 있 는 점, ④산출된 NSF 점수는 애플이 독자적인 방식에 따라 이용자에게 청구하 기 위한 판단에 사용하였고,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로부터 고객별 NSF 점수를 회신받지 않았으며, 애플이 이용자의 NSF 점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등 NSF에 대하여 지배·관리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위험도가 높아서 결제 거절 혹은 카카오페이 결제수단 등록/해제 거절 상황에서 고객 질의 시 카카오페이가 답변이 불가하고 애플 고객센터로 문의해야만 해결이 가능*하므로 정보주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카카오페이 이용자에게 애플 내 결제수단 등록 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국외 이전 동의를 받으면서, 결제 처리를 위해 관련 정보가 중계기관인 알리페이를 통해 애플에 제공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NSF와 관련해서는 이용약관 등에 알리페이에 대한 위탁에 관

한 내용은 전혀 없어, 이용자는 NSF 점수 산출·전송을 위해 알리페이에 본건 정보가 위탁된다고 예측하기 어려운 점, ⑥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로부터 본건 정보 연동을 중단한다는 컨퍼런스콜('24.5월경, 카카오페이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개시 후)을 받은 후에도, 既 산출한 고객별 NSF 점수를 '24.8.7.까지 애플에 제공하는 등 NSF 스코어 관련하여 애플 측의 지시·관리에 따라 NSF 점수 산출·전송 업무를수행한 점, ⑦애플이 일괄청구 적용 시 알리페이에 지급하는 수수료(청구 건당)가절감되고,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한 청구 손실은 최종적으로 애플이 부담하게 되므로, NSF 점수는 애플의 손실 절감 및 이익증대를 위한 애플의 업무·이익을 위한 점, ⑧카카오페이는 애플 이외의 해외가맹점 결제정보에 대해서는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 알리페이에 전송하고 있는바, 그 정보와 본건 정보 간 계약상***·기술상**** 구분이 없는 점 등 이상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를 위수탁 관계로 보기 어렵고, 카카오페이는 제3자인 애플 및 그수탁자 알리페이에 본건 정보를 제3자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

- * (알리페이 연동) 카카오페이 / (NHN KCP 연동) 신용카드, 휴대폰결제, PAYCO
- ** 알리페이와 NHN KCP의 데이터 연동 역할이 동일함(자금정산 관여 유무만 차이)을 애플도 인정 ☞ 따라서, 알리페이도 수탁자 지위로 판단함이 타당
- *** 카카오페이-알리페이 간 계약서 內 NSF 점수 및 본건 정보 취급에 관한 특약 부존재(일반 적인 비밀유지약정(3page 영업비밀 등 관련) 및 정보보호서약(1page 서식)만 존재)
- **** 양 데이터 간 key값이 동일하여, 가령 알리페이는 ①카카오페이·Android 이용자 A의 NSF 점수(카카오페이가 처리위탁이라고 주장하는 정보) 및 ②A가 일본 면세점(알리페이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QR 결제한 내역(제3자 제공한 정보)을 서로 결합하여 A를 알아볼수 있으며, 이에 관한 카카오페이의 실질적 통제 부존재

< (참고)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과 제3자 제공 구분 기준 관련 판례 >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있어 '수탁자'가 제3자 제공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개인정보 보호 법」제17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인 면, 「개인정보 보호 법」제26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과 관련된 위탁자본인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있어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 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것 외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고, 정보제공자의 관리ㆍ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제공인지 아니면 처리위탁인지는 개인정보의 취득 목적과 방법, 대가 수수여부, 수탁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여부,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 (참고) 업무위탁과 제3자 제공의 비교 - 개인정보 보호 법령 해설(P.206) >

구분	업무위탁	제3자 제공
관련조항	제26조	제17조
예시	·배송업무 위탁, TM 위탁 등	· 사업제휴, 개인정보 판매 등
이전목적	·위탁자의 이익을 위해 처리 (수탁업무 처리)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리
예측 가 능 성	·정보주체가 사전 예측 가능 (정보주체의 신뢰 벌위내)	·정보주체가 사전 예측 곤란 (정보주체의 신뢰 벌위밖)
이전 방법	· 원칙 : 위탁사실 공개 · 예외 : 위탁사실 고지(마케팅 업무위탁)	·원칙 : 제공목적 등 고지 후 정보주체 동의 획득
관리·감독책임	위탁자 책임	제공받는 자 책임
손해배상책임	위탁자 부담(사용자 책임)	제공받는 자 부담

나.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본건 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제공받은 행위

{보호법 제64조(시정조치 등)}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가 동의 없이 제공해도 적법하다고 검토한 결과를 신뢰하고 전송받은 것으로, 카카오페이의 검토 오류 가능성까지 인식하였다거나 마땅히 인식(보호법 제71조제2호)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애플 서비스에서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시 이용되는 NSF 모델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구축·이용된바, 파기하도록 시정명령이 필요하다.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명령

피심인에 대해 보호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NSF 모델은 카카오페이로부터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공받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로 구축·이용된 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 2023-6호, 2023.9.22. 시행) 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 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V. 결론

피심인에 대해 보호법 제64조(시정조치 등)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25년 1월 22일

위원장 고학수 (서명)

부위원장 최 장 혁 (서 명)

위 원 김일환 (서명)

위 원 김진욱 (서명)

위 원 김진환 (서명)

위 원 박상희 (서명)

위 원 윤영미 (서명)